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92
----------	-------

발의연월일 : 2025. 9. 2.

발 의 자 : 장종태·남인순·김 윤
김원이·전진숙·문진석
오세희·김선민·채현일
이재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음. 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치과의사는 「약사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그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89조제1호 중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을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 ⑤ (생략)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치과의사는 「약사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그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87조의2(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략)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 · 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제87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제18조제4항----- ----- -----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 5. (생략)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u>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u>,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 제2항을 위반한 자 2. ~ 4. (생략)	----- -----. ----- -----. 3. ~ 5.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 ----- -----. 1. ----- ----- -----<u>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u>, 제18조제3항----- ----- ----- ----- 2. ~ 4. (현행과 같음)
---	--